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과

1 협상경위

- 2005년 2월 1차 협상 이후 11차례 협상 진행
- 2005년 12월 양측 정상간에 관세인하방식 합의
 - 현행관세유지, 관세 일부 감축 등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 200개 확보(HS 6단위)
 - ‘품목단체농업통상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민감농산물을 중심으로 한(200개중 농산물이 170여개) 관세인하 계획 확정, 협상대응
- 한·아세안 FTA 11차 협상에서 상품협상 타결
 - 농산물 양허제외 40개(HS6단위), 10년간 양허제외 후 1/5 축소 117개 품목 등 초민감품목 200개 반영
 - 5월 중순 양측 경제장관 회담시 서명
- 상품협정에 대해 하반기 국회비준 요청 전망
 - 국회비준 후 2007년부터 상품협정 발효 전망
- 서비스·투자분야는 현재 협상 중이며 연말까지 타결 목표

2 농산물 관세인하계획 타결 내용

- 초민감품목
 - 현행관세가 50% 미만이므로 양허제외된 A 품목 5개 및 현행관세유지품목 E를 합하여 총 40개 농산물을 현행관세유지(양허제외)
 - 대부분의 민감농산물(117개)은 10년동안 양허제외 후 관세의 1/5만 소폭 감축하는 B로 배치하여 민감성 최대한 확보
 - 보리, 오렌지 주스 등 23개 품목은 10년 후 관세 1/2 감축
 - 강낭콩, 메니옥은 아세안 수입량의 절반수준을 TRQ로 주는 대신 일반관세는 현행을 유지기로 함.
- 일반 민감품목
 - 기타 가공농산물 등 103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10년동안 현행관세를 유지하다가 관세를 5%p 미만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합의

3 원산지 협상 타결 내용

- 01류~14류 : 완전생산기준
 - 육류, 화훼류, 양념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등 신선 농산물은 아세안 역내에서 기르


구분	내용	품목수(HS 6단위)	주요 농산물
A	2016년까지 50%p 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실질적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 제외 2016년 1/5 감축	117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국화, 카네이션, 장미, 양란,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도, 밤, 잣, 대추야자,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미료, 기타 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 제외 2016년 1/2 감축	23	맥주보리, 걸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공곡물, 오렌지 주스
D	TRQ제공 현행관세유지	3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전분
E	현행관세유지	35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기타 조제 식료품 등

거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인정

- 15류~24류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 04류, 14류 :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 45% 기준
 - 우유, 요구르트, 치즈, 햄 등 일부 낙농품 및 육가공품, 조제식료품 등은 제3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가 최소한 40% 이상 충분히 발생하면 원산지를 인정, 부가가치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원산지 불인정
 -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세안측이 주장하는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을 수용하되, 참

기름, 고추장, 김치, 인삼·인삼가공품 등 전통 식품은 원산지 기준을 강화

※ 아세안측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도 FTA 체결 이전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임.

-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중국, 인도,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음. 

본고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과
(02-500-1709)로 문의